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80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이성권 · 이현승 · 이달희
김용태 · 곽규택 · 이만희
배준영 · 강대식 · 정연욱
조승환 · 안상훈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1호 중 “아동에”를 “보호자가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 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 대 신고가 접수된 <u>아동에</u> 대 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 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2. ~ 4. (생 략) ⑦ ~ ⑪ (생 략)	----- ----- ----- ----- -----. 1. ----- -----<u>보</u> <u>호자가 보호·양육·교육하고</u> <u>있는 모든 아동에</u>----- ----- -----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	---